

■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[별표 2] <개정 2022. 12 .30.>

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(제6조제1항 관련)

1. 공통기준

구 분	기 준
진 료 과	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전문과목 5개과 이상
병상 수 및 환자진료 실적	1. 허가 병상 수 5병상 이상 2. 연간 외래환자(실제 인원) 1,000명 이상
시설 및 기구	1. 치과 용 진료의자: 각 과별 2대 이상 2. 구내 방사선촬영기 및 구외 방사선촬영기: 각 1대 이상 3. 방사선필름현상장치 또는 디지털영상처리장치: 1대 이상 4. 방사선필름판독시설 또는 의료영상저장전송체계(PACS 시설): 1대 이상 5. 구강병리검사실, 의무기록실, 치과기공실, 회의실, 도서실, 중앙 소독실 및 당직실(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의 응급의료기관에만 해당한다)을 갖출 것

2. 전문과목별 기준

전문과목	전 속 지 도 전문의 수	연간 환자진료 실적	시설 및 기구
구강악안면외과	2명 이상	· 퇴원환자(실제 인원) 50명 이상 · 외래환자 2,000명 이상	별표 1 제2호의 구강악안면외과의 시설 및 기구와 동일
치과보철과	1명 이상	· 외래환자 2,000명 이상 (연인원)	별표 1 제2호의 치과보철과의 시설 및 기구와 동일
치과교정과	1명 이상	교정환자 100명 이상	별표 1 제2호의 치과교정과의 시설 및 기구와 동일
소아치과	1명 이상	외래환자 2,000명 이상 (연인원)	별표 1 제2호의 소아치과의 시설 및 기구와 동일
치주과	1명 이상	· 외래환자 2,000명 이상 (연인원) · 치주외과 처치 300명 이상	별표 1 제2호의 치주과의 시설 및 기구와 동일
치과보존과	1명 이상	외래환자 2,000명 이상 (연인원)	별표 1 제2호의 치과보존과의 시설 및 기구와 동일

구강내과	1명 이상	외래환자 2,000명 이상 (연인원)	별표 1 제2호의 구강 내과의 시설 및 기구 와 동일
영상치의학과	1명 이상	• 구강내 방사선영상판독 3,000장 이상 • 구강외 방사선영상판독 1,000장 이상 • 특수영상판독 100장 이상	별표 1 제2호의 영상 치의학과의 시설 및 기구와 동일
구강병리과	1명 이상	• 외래환자 생체검사 200사 례 이상 • 입원환자 생체검사 40사 례 이상	별표 1 제2호의 구강 병리과의 시설 및 기 구와 동일
예방치과	1명 이상	외래환자 1,000명 이상 (연인원)	별표 1 제2호의 예방 치과의 시설 및 기구 와 동일
통합치의학과	1명 이상	외래환자 2,000명 이상 (연인원)	별표 1 제2호의 통합 치의학과의 시설 및 기구와 동일